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
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상조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.10.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 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2,016,000원”을 “**2,092,000원**”으로 조정(안 제3조 제1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2,016,000원”을 “2,092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(안 제3조 제1항)

○ 검토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. 10. 31 「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~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도 월정수당에 ‘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.8%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서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,016,000원에서 2,092,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>

○ 심의일시 : 2014. 10. 31(금)

○ 의결내용

- 4년간(2015~2018)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
- 2016~2018년도 :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
- 한도액 : 3,959만원(년)

관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-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-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-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>
 -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-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- 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